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함.

2. 주요내용

가.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13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14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<u>2013년 12월 31일까지</u>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	<p>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14년 12월 31일까지</u>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</p> <p>제38조(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.

4. 작 성 자

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 철 환